

---

#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

---

글 : 편집부  
(자료 발췌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지난 9월 우리 회원사인 전북 부안의 (주)참프레 (대표 박세진)가 오리 분야 최초로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았다.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가 지난 2014년 1월 도입된 이후, 축산물 가공품 전문 브랜드 업체에서 오리와 육계분야 동시에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한 것이다.

(주)참프레는 지난 2013년 9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과 HACCP 체인 유통망 구축 기반조성을 위한 MOU체결을 맺은 후, 통합인증 경영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끝에 육계 친환경제품(포장육)과 오리 친환경제품(햄류)에 안전관리통합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국내 오리업체로서는 최초로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

참프레는 앞으로 HACCP인증 농가 확대를 통해 위생적으로 차별화된 통합인증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참프레는 사육단계부터 도계/도압단계, 가공단계까지 각 단계를 관리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안전관리통합인증에 참여하는 농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물이 최초 사육농장에서 도축장을 거쳐 가공·포장되고 운반·판매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어느 한 단계에서만 위생·안전에 빈틈을 보여도 소비자는 안심할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단계별 HACCP인증마크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합인증 마크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아직 통합인증제에 대한 개념과 그 효용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통합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농가와 업체를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다.

##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란

### ▣ 정의

-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
- 농장에서 판매까지 HACCP체인을 구축하고, 단계별 HACCP제품의 구분관리를 통해 소비자「안전관리통합인증 축산」으로 판매가 가능한 경영체에 인증

### ▷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제7조의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제 2014-123호)

### ▣ 인증주체 및 대상

#### ▷ 인증주체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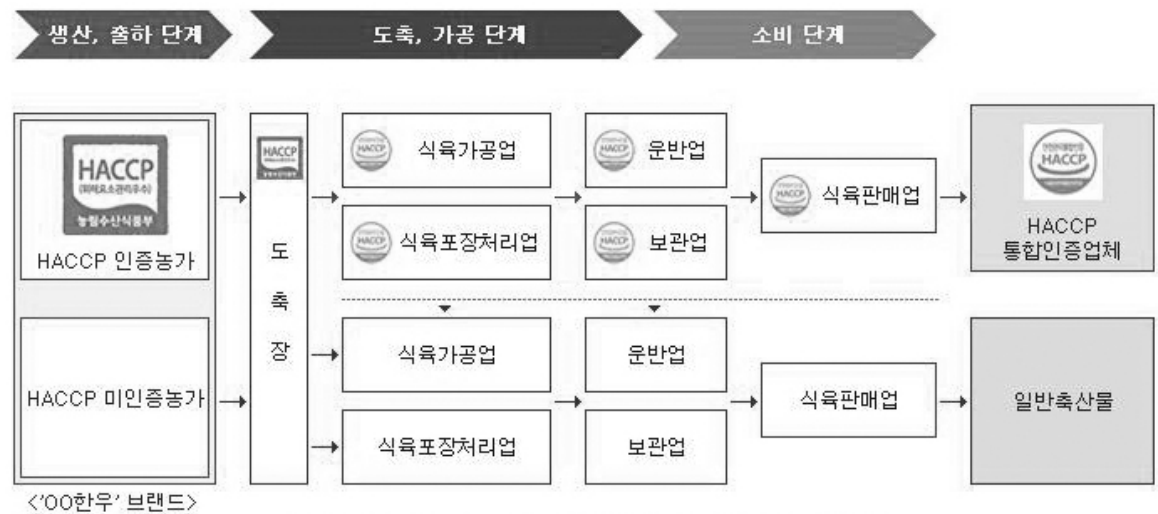
- 조사·평가 및 연장심사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권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인증대상

- 축산물의 모든 유통단계 HACCP 적용을 관리할 수 있는 농·축협, 브랜드경영체, 유통업체(매출 50억 이상) 등

#### ▷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시(식육)]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축산물 생산~판매 관리체계



2015. 9. 4 (주)참프레 안전관리통합인증 인증서 취득

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 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

## ■ 인증요건 및 운용방안

### ▷ 용어 정리

- 통합인증업체 :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준수하는 브랜드경영체, 유통법인 등
- 통합관리프로그램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에 HACCP를 적용·운용하고 있는 통합적인 위생관리프로그램
- 참여하는 업소 :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

### ▷ 구비서류

(관련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

### 조의3 ④항)

- 별지 제1호의4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신청서
- 안전관리통합인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 통합관리프로그램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최소 3년 이상)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 관련 서류 (인증서 등)

### ▷ 인증요건

- (관련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⑤항)
-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 통합인증업체는 가축의 생산부터 판매 등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관계된 업소를 보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약에는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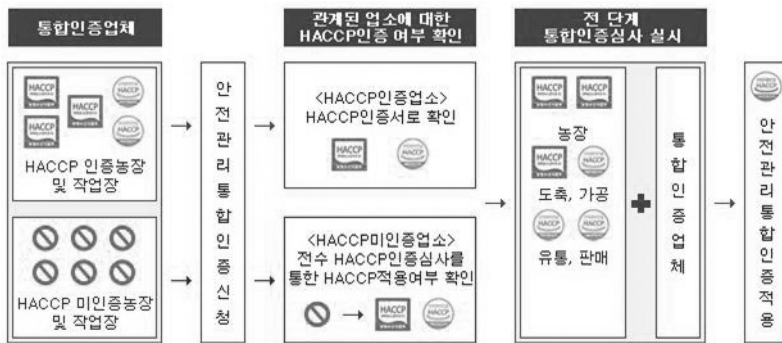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은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모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산물의 구분관리를 통한 HACCP 전용 유통망을 확보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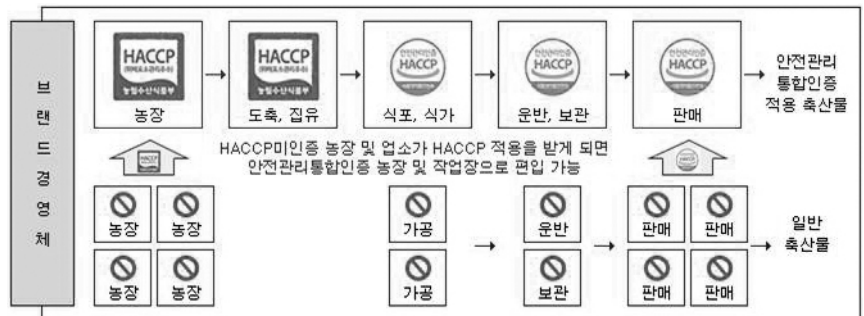
- 단계별 일부만 HACCP을 적용하더라도 HACCP 체인이 구축된다면 신청 가능하며 HACCP 미인증 업소가 HACCP 적용을 받게 되면 인증 변경을 통해 안전관리통합인증업소로 편입 가능
- 통합인증업체에서 HACCP 미인증 업소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서 각각의 HACCP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통합인증업체에서 신청한 HACCP 미인증 농장 및 작업장에 대한 전수 HACCP 인증심사 완료 후, 통합인증업체 및 관계된 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

▷ 운용방안

- 통합인증업체는 각 단계별 HACCP 인증 축



HACCP 미인증 농장 및 작업장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안전관리통합인증의 운영방안 모식도